

보험연구원 정책 세미나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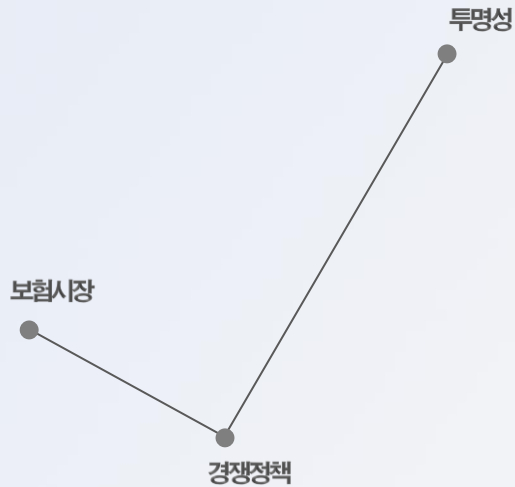
- 보험산업 규제리스크 완화를 중심으로 -

2013년 10월 24일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이승준 연구위원

발표순서



- I 연구배경
- II 보험시장 경쟁정책 현황
- I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이슈
- IV 개선방안
- V 결론



I. 연구배경



- ✓ 1999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이 금융업 등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 시작
- ✓ 경쟁정책의 목적 :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남용을 막아 경제후생(Economic Welfare) 증대
 -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 증대
 - 자중손실(Deadweight Loss) 감소
 - 시장 효율성 (Market Efficiency) 제고
- ✓ 보험업에도 2000년 가격자유화 이후 공정거래법 적용사례가 증가하고 동시에 관행적인 행정지도 등 보험규제도 지속됨에 따라 보험산업 규제리스크 증가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 ✓ 보험산업의 공정거래 관련 규제리스크는 실제 담합 여부와 별도로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므로 규제리스크 경감 방안 필요
- ✓ 특히 전문규제와 경쟁규제가 함께 적용되며 법체계 불명확성에서 파생하는 보험회사 규제리스크 경감
- ✓ 보험시장 경쟁정책 현황과 법적용체계 및 방법 상의 이슈를 살펴보고 개선방안 제시
- ✓ 보험시장의 **실질적 경쟁**을 증진하면서 보험회사의 **규제리스크 완화**하는 방향 모색

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적용현황 : 법규체계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현재 적용제외	125조 (상호협정 인가) 공동행위 인가, 변경, 폐지 - 원자력보험 공동인수 (거대재해) - 자동차보험불량물건 공동인수 - 손해보험공동인수 (안보)	카르텔 일괄정리법(1999) : 요율산 출기관 순보험료 산출 및 제공
		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적용면제
개별 적용제외	규정 없음	12조 (기업결합 신고) 보험회사 간 인수 & 합병 19조 (부당 공동행위 금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제한 적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 금지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협회를 통한 부당 경쟁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적용현황 : 공정위 심결 (생보)



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의 내부거래공시, 의결권제한 위반 사항이 다수 있으며 최근 들어 부당공동행위 위반이 6건 발생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부당공동행위	-	-	-	-	-	-	-	-	3	-	1	1	-	1	6
불공정약관	-	-	1	-	-	-	-	-	-	-	-	-	-	-	1
부당지원행위	1	-	-	-	-	-	-	-	-	-	-	-	-	-	1
의결권제한 위반	2	-	-	-	-	-	-	-	-	-	-	-	-	-	2
대규모내부 거래 공시위반	-	-	2	-	2	2	-	-	-	-	-	-	-	-	6
기업결합신고 위반	-	-	-	-	-	-	1	-	-	-	-	-	-	-	1
자료미제출	-	-	-	-	-	-	-	-	-	-	-	-	1	-	1
계	3	-	3	-	2	2	1	-	3	-	1	1	1	1	1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적용현황 : 공정위 심결 (손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우월적지위 남용 사례가 있고, 가격자유화(2000.4) 이후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이 5건 발생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부당공동행위	-	1	1	-	-	-	-	1	2	-	-	-	-	-	5
경쟁제한행위	-	-	1	-	-	-	-	-	-	-	-	-	-	-	1
거래상지위 남용	-	-	-	-	-	-	-	-	1	-	-	-	-	-	1
부당고객유인	-	-	1	-	-	-	-	-	-	-	-	-	-	-	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	-	1	-	-	-	-	-	-	-	-	-	-	-	1
부당지원행위	1	-	-	-	-	-	-	-	-	-	-	-	-	-	1
의결권제한 위반	1	-	-	-	-	-	-	-	-	-	-	-	-	-	1
대규모내부 거래 공시위반	-	-	1	-	2	-	-	-	-	-	-	-	-	-	3
계	2	1	5	-	2	-	-	1	3	-	-	-	-	-	14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적용현황 : 심결사례



- ✓ 부가보험료 자유화(2000.4)를 계기로 2000년대 들어서며 보험 가격결정행위에 대한 본격적 공정거래법 적용 시작

사례	연도	관련 보험회사	심결내용
1	2001	11개 손보사	자동차보험료
2	2002	10개 손보사, 손보협회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유료화
3	2007	10개 손보사	일반손해보험요율
4	2008	13개 생보사	예정이율, 공시이율, 배당률
5	2008	14개 생보사, 10개 손보사	영업보험료 할인/환급 폐지/축소
6	2011	16개 생보사	예정이율, 공시이율
7	2013	9개 생보사	최저보증수수료율

사례 1 : 자동차보험료 (2001)



<합의내용>

- ✓ A화재 등 11개 손보사는 2000년 8월 1일자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자동차업무부장회의에서 참조순보험료 이하 보험료 사용 금지와 부가보험료 산출방식 유지와 같은 보험료 산출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나눔.

<행정지도와 가격결정>

-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개발원 산정 참조순보험료의 인상율을 당초 5.4%에서 3.8%로 하향 조정하고 사업비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자제할 것을 지도
- ✓ 이에 11개 손보사는 이에 따라 자동차업무부장 회의에서 보험개발원 제시 참조순보험료율의 변동만큼만 조정하고 그 이하로 덤핑하지 말자고 논의 후 결국 인상분(3.8%)만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신고

<법원판단>

- ✓ 대법원(2005) 합의추정 복명 판결로 보험회사 간 합의 불인정

사례 5 : 단체상해보험 (2008)



<합의내용>

- ✓ 14개 생보 10개 손보사 2004년 단체상해보험상품의 보험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할인·환급율 및 공동위험률 정비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여 단체상해보험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함.
- ✓ 이후 손생보 각각 2005-2006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단체상해보험 관련 예정이율, 순보험요율, 부가보험요율 등을 합의

<행정지도>

- ✓ 경쟁격화로 인해 손해율이 상승하자 단체상해보험 공동정비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감독원 지시로 구성된 작업반은 금감원, 손생보협회, 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 포함.

<공정위>

- ✓ 행정지도에 따라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 58조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징금만 20% 감경

사례 7 : 변액보험 수수료를 (2013)



<상품공동개발과 합의내용>

- ✓ C생명 등 4개 생보사가 2000-2001년 작업반을 운영하며 변액 보험상품 공동개발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를 기화로 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수수료율의 수준 또는 상한에 대해 합의

<행정지도>

- ✓ 금융감독원은 변액보험 영위기준(2000년 11월)/변액보험 내부 심사기준(2001년 3월경)을 통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을 매 월/년 특별계정적립금/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행정지도

<가격결정>

- ✓ 4개 생명보험회사는 작업반 회의에서 GMDB 수수료율 수준을 A생명에서 산출한 0.1%로 정하기로 합의 - 상품도입 초기에 통계미비 상황에서 선도회사 결정에 의존

I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이슈 : 법체계



- ✓ 현재 보험산업 내 경쟁정책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행하는 **전문규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하는 **독점규제**의 이원적(또는 병행적) 체계
 - 규제의 목적이 다르므로 “이중”보다 “이원”으로 표현
- ✓ 따라서 공동행위에 대한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적용에 상충 가능성 존재,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규제리스크가 증가
 - 수범자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중복규제로 받아들일 개연성이 큼.
-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범위와 조건이 불명확함.
 - 보험업법 상 상호협정이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의 유일한 규정
 - 보험시장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개별행위 적용제외 조건과 범위를 법체계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I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이슈 : 행정지도



- ✓ 공정거래위원회 보험회사 부당공동행위 심결사례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의 보험가격 관련 행정지도와 연관됨.
 - 가격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가격결정은 여전히 감독당국의 지침에 의존
 -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행정지도는 거부하기 어려움.
 -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및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
- ✓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 공동행위 심사지침”(2009)은 수범자 대상 법 집행 원칙
 - 법령에 근거한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행한 개별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
 - 행정지도를 빌미로 한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

I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이슈 : 소비자신뢰



- ✓ 법체계와 행정지도의 불명확성은 보험산업 규제리스크 증가와 소비자 **신뢰저하**로 이어짐
 - 소비자신뢰는 이에 기반한 장기적 사업모형을 가진 보험업에 특히 중요한 의미
- ✓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인한 과징금 등 처분은 실제 담합 여부나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소비자 신뢰저하로 이어져 보험업의 장기적 기반을 흔들 수도 있음.
 - 생보이자율담합 사례 : 공정위 과징금 처분, 금융소비자연맹, 서울지방법원소송 제기, 그러나 법원판결(2013)은 담합혐의 배척
 - 향후 예정된 공정거래위반 관련 집단소송 도입은 보험산업의 규제리스크를 증폭시키고 중소보험사의 존립과도 직결
- ✓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보험시장 적용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전문규제당국의 공동행위 관련 행정지도 절차의 명확화는 소비자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
소비자 신뢰 회복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

IV. 개선방안 :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명시>

- ✓ 보험업 공동행위 적용제외를 보험업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거대재해 공동인수 등 보험업 **특정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보험업법**에 명시
 - 신상품 공동개발 등 향후 시장환경과 정보기술 변화에 따라 필요한 **개별적 공동행위** 적용제외 판단기준 마련

<해외사례>

- ✓ 일본 보험업법은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근거, 범위 및 조건과 공동행위 인가 시 공정위와 관계를 명시
 - 101조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 원자력, 자동차배상책임, 지진보험(제1항)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재보험(제2항) 적용제외 명시
 - 102조 : 공동행위 인가기준 제시(제2항)
 - 105조 : 공동행위 인가 전 공정위 사전동의 필요(제1항)
- ✓ EU와 미국도 보험업 공동행위 적용제외를 법적으로 명시

IV. 개선방안 :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계속)



	EU	미국	일본
경쟁법 보험시장 적용제외 규정	일괄면제규정(BER) 1. 통계집적 사용 2. 공동보험/공동 인수	매캐런-퍼거슨법 1. 주 감독 2. 보험사업 3. 정당한 행위	보험업법 규정 1. 항공, 원자력, 지 진, 자동차책임 2. 재보험 (조건부)
공동행위 규제	적용제외기준 (조약 101조 3항) 1. 생산유통촉진 2. 소비자편익 3. 불가피성 4. 시장경쟁유지	주 감독청이 불공 정규제까지 일원 적으로 담당 (NAIC 불공정거래 행위 모델법, 뉴욕 주 불공정거래행 위 규제)	공동행위인가기준 (보험업법) 1. 소비자 이익 2. 무차별적 3. 가입 및 탈퇴 4. 필요 최소한도

IV. 개선방안 :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계속)



현행 보험업법 제125조	보험업법 검토의견	비고
조문제목 상호협정 인가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제1항 업무에 관한 공동행위를 위한 상호협정 체결 시 금융위 인가	- 공정거래법 적용제외 해당 공동행위 명시 - 일몰조항으로 주기적 검토	
(신설)	특정 공동행위(거대위험의 공동인수 등) 적용제외	공동행위내용 명시
(신설)	개별적 공동행위 인가기준 • 소비자편익 • 경쟁촉진성 • 가입탈퇴 자유	적용제외조건 열거
제2항 금융위원회의 상호협정 체결, 변경, 폐지 명령권	신청받은 공동행위 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수정	정부주도 공동행위 조항 삭제
제3항 전항의 명령 전 공정위와 협의	공정위 사전 "동의" 명시	금반언 원칙 적용

IV. 개선방안 :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 (계속)



<보험업 불공정거래 규제>

- ✓ 보험업법에 보험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도입하여 전문규제당국이 관할
 - 전문규제기관이 보험시장 공정거래도 규제하며 보험시장 경쟁제한성도 함께 고려
 - **전문적 규제목적** 상의 재무건전성 강화효과와 **경쟁제한성**을 비교형량 가능

<해외사례>

- ✓ 미국 뉴욕주의 경우, 제2316조의 요율관련 공동행위 규제(일몰조항)와 24절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주보험업법에 명시하고 주 감독청이 담당
 - 뉴욕 주 반독점법인 Donnelly Act(1899)는 손해보험 요율 관련 주 보험법이 규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적용
 - 대부분 주에서 2013년 7월 현재 NAIC Unfair Trade Practices Act를 전면 또는 부분 채택

IV. 개선방안 : 적용제외 법체계 정비(계속)



<발생가능 문제점>

- 너무 넓은 범위에 걸쳐 적용제외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시장 독점규제 후퇴 우려

<해결방안>

- 전문규제기관 감독개입 시 경쟁제한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고려
- 일몰조항으로 주기적 심사를 통해 적용제외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
- 법원도 타 법령에 근거한 공동행위도 “필요최소한”에 그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최종 판단 가능

<기대효과>

- 이원적 규제에 의한 충돌을 막아 보험시장의 규제리스크 경감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 공정거래법 제58조를 통한 적용제외 근거가 명확해짐.

IV. 개선방안 :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



<보험가격 자유화 : 제도와 현실 괴리>

- ✓ 제도면에서 보험가격 자유화는 2002년 4월에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보험료 결정은 아직 전문규제당국 지침에 의존
 - 감독당국은 건전성 규제를 위해 보험시장 가격결정구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 (사진)
- ✓ 제시된 사례 등에서 보듯 행정지도는 보험회사의 자율적 가격결정 권한을 제한하므로 자제되어야 함.
 - 담합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가격상한 제시 등을 자제하여 실질적 자율화로 보험시장 경쟁 활성화 필요
 - 일본도 보험요율과 관련된 행정지도는 사라지고 없음.
- ✓ 전문규제 목적 상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규제기관 간 절차를 명확히 하여 보험회사 규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시행

생보 보험료 인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금감원, 보장성보험 올리겠다는 업계 움직임에 반대

생명보험업계의 보험료 인상이 올해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일부 중소형 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이달부터 종신, 질병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거절당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한발 더 나가 내년도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생보사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보험료 인상 설왕설래

업계는 이달부터 인상 추진

금감원, "보험사 감내할 수준"

"올해는 물론 내년도 어렵다"

생보사들은 지난 4월 표준이율이 3.75%에서 3.5%로 인하되자 이에 맞춰 예정이율을 내리려 했으나 서민 부담을 최소화 하라는 감독당국의 뜻에 따라 예정이율을 동결, 보험료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몇몇 생보사들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3개월 동안 보험료를 유지하고 이달부터 개정상품이나 신상품에 대해 다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금감원 반대에 부딪쳐 무산되자 같은 계획을 갖고 있던 타사들도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중형생보사 관계자는 "대다수 생보사들이 7월 이후 상품 개정 등을 통한 보험료 인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지만 장기화 되면 상품개발 투자나 영업 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경영 쪽에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여전히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표준이율이 인하됐더라도 예정이율을 낮출 정도는 아니며 여전히 생보사들이 영업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을 통해 책임준비금 마련 등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창민 금감원 생명보험팀

팀장은 "서민들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화가 없다"며 "보험사들이 내년에 예정이율을 낮추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금감원 반응에 대해 생보사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저금리로 자산운용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표준이율 하락으로 책임준비금 적립까지 늘어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생보사들이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지만 금감원이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일부사는 연내 보험료 인상 계획을 중단한 곳도 있다"며 "생보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다 같이 올릴 경우 탈함으로 돌릴 수 있어 공동 대응도 어렵고 어느 한 생보사가 나서주길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대부분 생보사의 예정이율은 종신보험 3.5%, 변액보험 등 기타 상품 3.75% 정도다.

정희재 기자 jhc@insweek.co.kr

IV. 개선방안 :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계속)



<개선방안>

-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지도 관련 규제당국 간의 입장을 먼저 교환하고 의견수렴 후 필요시 공동행위 조사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행정부처 대상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발표(1995)
 -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지도 심사지침은 피규제기관 대상
 - 금융위와 공정위의 업무협약(2007) 활성화
- ✓ 행정지도로 인한(또는 행정지도 없이도) 공동행위가 필요한 보험회사는 사안 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거쳐 규제리스크 사전 차단
 -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제3보험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의뢰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같은 경쟁 촉진성에 따른 개발단계 공동행위 적용제외 인정

IV. 개선방안 :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계속)



행정지도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입장(1995)	
성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대상	행정지도를 내리는 각 행정부처
내용	1.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2. 행정지도의 유형에 따른 독점금지법 상의 입장 • 진입 퇴출 관련 행정지도 • 가격 관련 행정지도 • 수량 시설 관련 행정지도 • 영업방법 품질 규격 광고표시 등 관련 행정지도
	3. 인허가 관련 행정지도에 대한 독점금지법 상의 입장

IV. 개선방안 :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계속)



<문제점 및 해결방안>

- ✓ 전문규제기관의 지침을 빌미로 한 보험회사 간 부당공동행위 증가 우려와 규제포획 시 경쟁규제까지 공백
- ✓ 전문규제당국과 경쟁당국의 소통 강화를 통해 전문규제 목적을 넘는 부당 공동행위 적발과 처벌 강화
 - 금융위와 공정위 간 업무협약(2007) 활성화
- ✓ 전문규제당국도 부당공동행위 의심 시 경쟁당국의 의견 수렴 및 조치

<기대효과>

- ✓ 규제당국 간 선 의견조율은 이원적 규제에 의한 충돌을 막아 보험시장의 규제리스크 경감
- ✓ 규제기관 간 소통 증대로 규제효율성 증대



<개선방향>

- ✓ 실질적 시장경쟁을 촉진하면서 이원적 규제가 보험회사의 **규제리스크**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향
 - 핵심은 법체계 정비와 규제당국 간 의견조율
 - **당국 간 선 의견조율 후 법 집행**으로 이원적 규제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가 해결 가능

<개선안>

- ✓ 개선안으로 **적용제외** 관련 법체계의 정비와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를 제안

<기대효과>

- ✓ 이원적 규제가 합리적으로 조정되면,
보험시장 경쟁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감사합니다.



사례 2 :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2002)



<합의내용>

- ✓ 손보험회와 10개 손보사가 "공정경쟁질서유지 상호협정"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를 명분으로 1997년 회의를 열고 "기타 응급 조치" 서비스 폐지를 결정 1998년 폐지. 1998년 이후에도 회의를 통해 5개 긴급출동서비스 등 폐지 또는 유료화.

<행정지도>

- ✓ 금융감독원이 1997년 보험업법에 따라 긴급출동서비스의 특별이익 제공 해당여부 검토를 지시했으나 폐지를 지시하지 않음.

<법원판단>

- ✓ 대법원(2006)은 금융감독원의 특별이익 제공여부 검토 행정지도를 빌미로 보험회사가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를 담합한 것으로 판결

사례 3 : 일반손해보험 요율 (2007)



<합의내용>

- ✓ 삼성화재 등 10개 손보사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업무부서 장회의를 통해 일반손해보험 중 10개 주요 보험종목의 순율, 부가율, 할증률의 범위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

<행정지도>

-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2002년 "일반손해보험 가격자유화에 따른 감독정책"에서 급격한 요율조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2004년에는 "할인·할증제 개선방안 통보"로 할증률 적용대상 및 그 범위를 축소함.

<법원판단>

- ✓ 대법원(2011)은 금감원의 지시가 보험료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보험료율 수준에 관한 구체적 직접적 지시가 아니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시

사례 4 : 퇴직보험 (2008)



<상품 공동개발과 운영>

- ✓ 퇴직보험은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1998년 생보업계 공동작업반이 공동개발, 1999년 인가, 2003년까지 공동상품으로 운영

<합의내용>

- ✓ 삼성생명 등 13개 생보사는 1998년부터 법인(영업)동업사회의를 통해 퇴직보험의 예정이율, 공시이율, 배당률을 합의

<행정지도>

- ✓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퇴직보험 상품의 보험가격에 대해 생명보험사들이 신고 또는 제출한 기초서류와 배당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심사
 - 2002년 1월 공동상품으로 개발하여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의 변경 시 공동으로 변경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품심사매뉴얼"을 보험사에 배포

<법원판단>

- ✓ 대법원(2009)은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

사례 6 : 생명보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2011)



<합의내용>

- ✓ B생명 등 16개 생보사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각종 회의를 통해 개인생명보험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이자율은 각자 결정
- ✓ 공정위는 이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로 보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징금 부과

<법원판단>

- ✓ 고등법원(2013)은 보험회사들이 정보교환은 하였으나 이율은 각자 결정하였으므로 담합이 아니라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모두 취소

<판시의미>

- ✓ 법원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정보교환과 같은 동조적 행위만으로 부족하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 결정 등 행위를 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판시

III. 보험시장 경쟁정책 이슈 : 소비자신회 (계속)



파이낸셜
뉴스

2012년 04월 06일 금요일
028면 경제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공동소송

금융소비자연맹 “피해금액 17조3천억”

생명보험사들의 부당한 공시이율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의 부당한 공시이율 담합처분과 관련,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금액을 반환받기 위한 공동소송을 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생보사들이 2001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확정금리형 상품의 예정이율과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2개사에 대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4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모씨 등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소송은 공정위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1차로 생보업계 대형 3사인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해를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6월에는 담합한 16개 전 보험사를 상대로 금융사상 최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생보사들의 담합기간 중 상품에 가입한 금융소비자는 자신들의 피해 반환 청구금액을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16개 보험사들의 7년간에 걸친 담합 기간 중 보험가입자들의 피해 건수는 1억2500만건에 피해금액은 17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희 기자

국민일보

2012년 04월 06일 금요일
012면 경제

“생보사들 이율 담합으로 손해”

금융사상 최대 규모 공동소송

금융소비자연맹 제기

조만간 소송인단 구성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생명보험사들이 이율 담합으로 고객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해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데 대해 배상하라는 금융사상 최대 규모의 공동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우선 담합을 자진해서 신고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연맹은 조만간 소송인단을 구성해 담합에 가담한 국내 16개 전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들 생보사는 2001년부터 7년간 이

율 담합으로 1억2500만건 계약자들에게 17조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들끓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653억원을 부과받았다.

연맹은 홈페이지(www.kfco.org, kifc.org) 초기 화면에 ‘생명보험사 이율담합 예상환급금 조회하기’ 코너를 개설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피해금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맹은 2001~2006년 담합기간 생보사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남희 연맹 사무총장은 “생보사들이 불법행위를 자인했음에도 고객에게 담타기 쉬운 보험료를 돌려주는거냐 외면하고 있어 공동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세욱 기자

서울경제

2012년 04월 06일 금요일
A02면 종합

생보사 공시이율 담합

결국 집단소송 비화

금소연, 7,000만원 배상 소송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담합 문제가 결국 집단소송으로 비화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5일 ‘생보사들이 공시이율을 담합해 보험 가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삼성·대한·교보생명을 상대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생보사들의 공시이율 담합은 확정이율형에 가입한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확정금리형 상품 가입자의 경우 당초 보험사의 약속보다 적은 환급금으로 연결됐다고 금소연 측은 주장하고 있다.

김모씨 등 40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의 피고는 담합 자진신고제(리니언시제도)를 적용 받아 과징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 감면된 회사들이다. /이수민기자 noenmy@sed.co.kr

조영준기자 myyeandro@sed.co.kr

東亞日報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B02면 경제 금융

동결... 인하... 동결... 車보험료 3년째 안올린다

금융당국 “車보험 사업 적자 나지만
손보사들 아직 감당할만한 수준”

국토부, 부품값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나이롱 환자’ 막기 위해 입원기준 마련

금융 당국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이후 3년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에 따른 적자가 늘어났지만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동결하기로 21일 방침을 정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료는 인상할 경우 그 부담이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며 “(현 상황은) 보험사들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10년에 3% 오른 뒤 2011년에는 동결됐다. 지난해에는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5% 내렸다. 주요 손해보험사도 금융 당국의 이 같은 기조를 파악하고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1분기(4~6월) 국내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43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1%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지난해 1분기 263억 원 흑자에서 올 1분

기 1769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감독 당국은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사업에서 일부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이익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동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다른 보험에서 매우는 방식이라 당장의 큰 손해는 없다”며 “장기적으로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올려 고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보험사가 주행거리연동 보험료 할인 상한 거리를 연간 7000km에서 1만 km로 높이는 등 업계 자체적인 경쟁에 나서는 점도 감안했다.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여지가 있다면 굳이 인상을 필요로 없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보험료 지급을 둘러싼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지난해 4533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일부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허위로 입원하는 속진 ‘나이롱 환자’도 좀처럼 줄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범위를 위탁하고 경상환자 입원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부품 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한다. 외제차 부품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경향신문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 020면 경제 기획

“연말까지 자동차 보험료 안 올린다”

금융당국, 적자 큰 손보엔 지원

금융당국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대신 적자 폭이 큰 손해보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마일리지 보험 등 할인 경쟁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건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다른 쪽에서 수익이

보전되는 게 있다는 얘기”라며 “다만 자동차보험 한 가지만 하는 중소형 보험사의 경우 적자가 심한 만큼 운전자보험 등 부가적인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8월까지 손보사의 자동차 보험료 적자 규모는 3368억원으로, 업계는 연말까지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손익분기점(77%)을 크게 웃도는 84.3%까지 올랐다. 모든 운전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라 당국에서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자동차보험만 판매하는 현대하

이카다이렉트는 지난해 손해율이 92.2%에 달한다. 이 회사는 잇따른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종목 추가 신청서를 냈다.

보험업계는 당국의 간섭 자체가 달갑지 않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마치 손보업계에서 보험료를 올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당국에서 막 잘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유감”이라며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다면 지급보험금이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朝鮮日報

2013년 08월 12일 월요일 B04면 경제종합

금감원 지침 따랐더니 공정위가 과징금... 금융권, 二重규제에 운다

(이중)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공시이율·변액보험 최저수수료
금감원이 정해줘 지켰는데
공정위가 거액 과징금 부과

보험사 입원 “참 답답하다”
지난달엔 공정위에 승소하기도

시장개입 자체해야

2007년 공정위·금감위

중복규제 말자 MOU 맺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아

이중 규제 논란이 불거진 주요 사건

보험사 변액보험 수수료 공정위가 3개 보험
료를 담합 사 고발했지만 검찰
(2013년 3월) 이 무혐의 결정

보험사 공시 이율 담합 서울고법이 공정위
(2013년 7월) 에 패소 판결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공시이율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수익률)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취소 소송에서 보험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1년 16개 보험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5개 보험사(과징금 합계 586억원)가 낸 소송이다. 서울고법은 “보험사들이 단순한 정보교환만 했을 뿐 서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11개 보험사가 낸 소송도 재판이 똑같이 때문에 공정위는 365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중 한 톨도 징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가 보험사들이 담합한 기간으로 보는 1998~2006년 가운데 2001년 4월까지는 아예 금감원에서 공시이율을 못박아 정해줬다. 이후로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의 지도를 받아서 한 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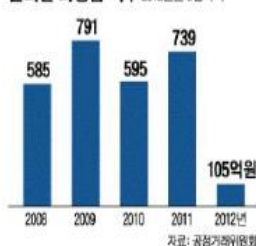
공정위가 답답이라고 문제를 삼은 것이라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두 명의 시어머니 사이에 끼여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다. 이런 ‘이중 규제’는 변변히 문제가 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각종 금리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정해주는 관치 (官治) 금융을 일삼고 있고, 이를 두고 공정위는 답답이라며 규제의 칼날을 휘두른다.

◇금감원 지도대로 했는데, 변변히 공정위 과징금

“금융감독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답답이라면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리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 3월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수수료(자산운용 실적이 악화돼도 최소한의 보험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는 수수료)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A보험사 임원은 “참 답답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10여년 전 해당 상품이 국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액수 2012년은 8월까지



내에 출시됐을 때 처음 나온 상품이 라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이 최저보증수수료율을 정해줬는데, 뒤늦게 공정위가 답답이라고 과징금을 매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공정위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교보생명 등 3개 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금감원 지도를 따랐는데, 공정위에서는 답답하다고 과징금을 물리는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금융투자협회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는 정재찬 공

정위 부위원장에 김기범 대우증권 사장이 “제조업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금융업은 자본시장법과 금융감독법이 따로 있어 이중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중복 규제하지 않겠다며 MOU 맺었지만 무용지물

금융권의 ‘이중 규제’ 문제는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잦은 개입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금융 당국과 조율 없이 담합 등에 대한 규제를 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부활한 재형저축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각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금리 차이가 은행별로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절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국민주책2종 채권을 거래할 때 증권사별로 할인 금리 차이를 0.2%포인트 이내로 하라고 금감원이 행정지도했는데 공정위에서는 다짜고짜 답답이 아니냐

고 묻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점이 누적되자 지난 2007년 권오승 당시 공정거래위원장 과 권오덕 금융감독위원장이 만나 중복 규제를 하지 말자는 업무협약 (MOU)을 맺었다. 하지만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묵시적인 형태의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데다, 공정위는 의형적인 담합 여부만을 근거로 실적을 높이려고 막무가내식으로 조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일단 공정위 제재를 받으면 금융회사들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조사받는 데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금융 당국은 위험 수위가 아닌 한 시장에 개입을 자체해야 하고, 공정위는 이중 규제를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진석 기자

IV. 개선방안 : 행정지도 절차 명확화 (계속)



파이낸셜
뉴스

2012년 02월 03일 금요일
005면 종합

보험 공시이율 등 가이드라인 따른 것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도 논란

소비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와는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기준을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생명보험사의 공시이율 담합건과 같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할 경우에도 담합이라고 결정하면서 관련업체와 관계부처의 불만도 큰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생보사 16곳이 2001년부터 5년9개월간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담합했다며 모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금감원은 생보사의 보험료율은 은행이 정기예금 및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고 어느 정도 관행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전달했다. 다만 행정지도와 별개로 실무자들이 추가로 만나 협의를 하는 것은 담합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방침을 꺾지 않았고 대형 보험사들은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를 통한 과징금 경감을 위해 먼저 담합을 인정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고 금감원 등 감독당국의 별도 규제와 행정지도에 따라 움직이

는 만큼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공정경쟁을 명분삼아 담합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의 행태 역시 문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정유사들에 부과한 과징금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을 했다고 25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매출이 많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브랜드 주유소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유 4사 중 GS칼텍스는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SK 이노베이션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 750억원, 에쓰오일 438억원이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담합은 사실과 다르다며 크게 반발하고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적지 관리를 위해 정유사들이 담합을 했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